

국 토 교 통 부

훈계·시정 요구

제 목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의령군, 합천군

관 련 자 ① 의령군 ○○○○○○○과(전 ○○○○○과) 지방○○주사 ○○○
② 의령군 ○○○○○과(전 ○○○○○과) 지방○○주사보 ○○○
③ 의령군 ○○○○○과(전 ○○○○○과) 지방○○서기 ○○○
④ 합천군 ○○면사무소 지방○○주사 ○○○
⑤ 합천군 ○○과(전 ○○면사무소) 지방○○주사보 ○○○
⑥ 합천군 ○○○○○과(전 ○○면사무소) 지방○○주사 ○○○
⑦ 합천군 ○○면사무소 지방○○주사보 ○○○
⑧ 합천군 ○○○○○과(전 ○○면사무소) 지방○○사무관 ○○○
⑨ 합천군 ○○과(전 ○○면사무소) 지방○○주사보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주사 ○○○은 2012. 1. 1.부터 2013. 10. 22까지, 지방○○주사보 ○○○은 2011. 7. 1.부터 2014. 7. 8까지, 지방○○서기 ○○○은 2012. 1. 1.부터 2014. 2. 23까지, 지방○○주사 ○○○은 2012. 7. 30.부터 감사일 현재까지, 지방○○주사보 ○○○은 2013. 1. 28.부터 2014. 3. 9까지, 지방○○주사 ○○○은 2015. 1. 1.부터 2015. 12. 31까지, 지방○○주사보 ○○○은 2015. 1. 1.부터 감사일 현재까지, 지방○○사무관 ○○○은 2014. 7. 25.부터 2015. 7. 1까지, 지방○

○주사보 ○○○은 2014. 1. 14.부터 2015. 7. 1까지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.

의령군과 합천군에서는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○○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2013년도에 의령군 224,000,000원, 합천군 289,000,000원 2015년도에는 합천군이 860,000,000원을 교부⁹⁰⁾받아 집행하였다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,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,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으며

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

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,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

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 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또한, ○○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낸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사업 목적인 「국가하천유지보수」 사업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한편, 의령군(○○○○과)에서는 2013. 5. 24. 경상남도 의령군 ○○읍 ○○리 ○○○번지에 있는 (주)○○○○○○○○(대표자 ○○○)과 ‘○○(○○○ 외 1개

90) 경상남도에서는 합천군, 의령군 등 8개 시·군에 국가하천유지보수비를 재교부함

소)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'을 총 용역부기금액 16,200,000원에 용역계약하고 같은 해 5. 27. 착수하여 같은 해 6. 25. 완료하였다.

그런데, 의령군(○○○○과)에서는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의 일환으로 '○○(○○○ 외 1개소)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'을 추진하면서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 지방하천인 ○○○ 구간 88m의 하천정비 용역을 위 용역에 포함하여 2013. 6. 25. 완료함으로써 지방하천인 ○○○ 구간(88m)의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소요된 비용 2,710,000원 상당이 국고보조금에서 부당하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.

이를 비롯하여 [표]와 같이 의령군과 합천군에서 시행한 6개 사업에서 국가하천 이외의 지방하천 및 소하천 시설공사 등을 위한 사업비를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비로 집행하는 등 총 24,610,000원 상당이 국고보조금에서 부당하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.

[표] “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비의 목적 외 집행 내역”

(단위 : 원)

기관명	사업명	예산	목적 외 집행 내역		
			위치(사업명)	기간	집행액
계					24,610,000
의령군 ○○○○과	○○(○○○ 외 1개소)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	16,200,000	경상남도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○○○-○번지 (지방하천 ○○○ 정비공사 실시설계)	2013. 5.27.~ 2013. 6.25.	2,710,000
의령군 ○○○○과	○○제외 ○지구 호안정비 공사 실시설계 용역	16,000,000	경상남도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○○○번지 (지방하천 ○○○ 취입보 실시설계)	2013. 8. 27.~ 2013.10.27	3,100,000
합천군 ○○면 사무소	○○면 청사 전기설비 보수공사	1,380,000	경상남도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○○○-○번지 (○○면 청사 전기설비 보수공사)	2013.12.27.~ 2013.12.31.	1,380,000
합천군 ○○면	○○소하천 하도 준설사업 장비 임차	5,800,000	경상남도 ○○군 ○○면 ○○○○ ○○소하천	2015. 9. 9.~ 2015. 9.22.	5,800,000

기관명	사업명	예산	목적 외 집행 내역		
			위치(사업명)	기간	집행액
사무소			(○○소하천 하도준설사업 장비 임차)		
합천군 ○○면 사무소	○○면 시설원에 간이집하장 울타리 설치공사	7,870,000	경상남도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○○○-○번지 (○○면 시설원에 간이집하장 울타리 설치공사)	2015. 5.21.~ 2015. 6. 8.	7,870,000
합천군 ○○면 사무소	○○면사무소 비가림시설 설치사업(추가)	3,750,000	경상남도 ○○군 ○○면 ○○○길 ○○ (○○면사무소 비가림시설 설치사업(추가))	2015. 5.21.~ 2015. 5.28.	3,750,000

* 의령군, 합천군 제출자료 재구성

조치할 사항 경상남도지사는

[훈계]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[시정] 국가하천 이외의 구간에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한 국고보조금 24,610,000원 상당을 국고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.